Ⅵ 기타유형의 사고

편 집 : 손해사정사 박성정[1)]
소 속 : 손해사정법인 가나

판결요지	피해자 과실	사건번호
심야(01:00), 편도2차선, 약5m 전방 횡단보도 설치, 2차선을 따라 60km 진행, 술에 취하여 우측 인도에서 2차선 차도로 갑자기 내려선 피해자의 과실	40%	서울지법 94나2663
야간(21:50), 편도4차선,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도 안으로 들어가 택시를 잡던 중 정체불명의 차량에 치여 3차선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. 피해자과실	80%	인천지법 9 6 가 합 21160
어린이용 안전띠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된 자를 끌어 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과실이 될 수 없다한 사안.	0%	대법원 91다16075
피해자가 적재함에 탄 것은 상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공무집행과 직접적 관련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편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인이 편승한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.	0%	대법원 69다1183
야간에 노폭 25미터인 경인국도에서 음주하고 택시 잡으려고 도로 중앙 가까이 걸어 나왔다가 제한시속 60킬로를 초과한 시속 70킬로로 과속 진행한 트럭에 충격 당함. 원고과실 40%	40%	서울고법 86나4502
아침 출근시 승객들과 차량으로 혼잡한 정류장에서 진입하는 버스에 먼저 타려고 차도에 내려서 뒤쫓아 가다가 버스 오른쪽 차체에 받힘. 피해자과실 40%	40%	서울고법 86나2915
출근시에 버스 타려고 차도에 서 있다가 버스에 받힘. 원고 16세. 원고과실 10%	10%	서울고법 86나2830
야간에 편도1차로 국도에서 오토바이 탄 채 길 건너기 위해 도로상에 서 있다가 차에 충격당함. 피해자 과실 30%	30%	서울고법 90나2569
야간에 천안고속도로 휴게소 진입하면서 휴게소 내 통행인 충격, 피해자 과실 15%	15%	서울고법 90나34993
주간에 편도 1차로 도로변에서 만 2세 10개월 남짓 된 어린이가 놀다가 굴착기 뒷2바퀴에 충격 당하여 사망. 피해자부모 과실 50%	50%	서울고법 90나525

1) 경력 20년의 손해사정사, 교통사고감정사
(前) PNS손해사정법인, (前) PNS법과학기술연구소, (前) 교통방송 및 보험신보 기고,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문위원
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 전공(석사) "논문 :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(판례중심)"

야간에 차량의 통행인 빈번한 차도 상에서 택시를 잡다가 충격당함. 피해자 과실 30%	30%	대법원 92다43722
보도는 따로 없고 다만 15M 가량의 비포장 길 가장자리 구역이 백색실선으로 차도와 구분되어 있는 시골의 편도1차선 국도에서 길 가장자리 구역에 서 있는 피해자 충격. 피해자 무과실.	0%	서울고법 89나29032
주간, 주택가 도로, 도로의 좌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만4세된 피해자 충격. 피해자 부모과실 15%	15%	서울고법 88나40292
노폭6m의 주택가 골목길, 피고는 주취운전, 시속30~40km 택시운행, 원고A는 손수레 세워놓고 신발 행상중, 손수레를 택시가 받는 충격으로 원고B를 조기분만, 원고 B는 조기분만 후유증으로 양안 실명, 원고측 과실 20%	20%	서울고법 87나1285
피고는 무면허로 오토바이에 채소와 과일 잔뜩 싣고 골목길 오르다가 골목가에 있는 점포의 차양 지주를 건드려 넘어지면서 그 아래에 앉아 일하던 원고를 적재물로 내리깔아 치상함.	20%	서울고법 86나2876
야간 편도1차선 국도, 오토바이 탄 채 길을 건너기 위해 도로상에 서 있다가 피고 차에 충격.	30%	서울고법 90나2569
폭우로 떠내려 간 신발을 횡단보도 상에 뛰어 들어 주우려던 9세된 어린이,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, 국민학교 입구.	30%	서울고법 86나3599
충북 옥천 지방국도, 눈비, 차도변에서 놀던 8세 어린이 갑자기 차도에 뛰어듬, 10m전방 발견, 경적 안 울리고 시속60km로 진행, 새마을 공장 부근.	40%	서울고법 87나2835
아침 등교 시, 사고 경위는 버스에 먼저 타려고 차도에 내려서 뒤쫓아 가다가 버스 오른쪽 차체에 받힘, 승객들과 차량으로 혼잡, 12세	40%	서울고법 86나2950
아침 출근시 정류장에서 진입하는 버스에 먼저 타려고 차도에 내려서 뒤쫓아 가다가 버스 오른쪽 차체에 받힘, 당시 승객들과 차량으로 혼잡.	40%	서울고법 86나2915